

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10월 22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: 2019년 10월 15일

나. 제안자: 황영호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0. 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황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, 강서구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
- 2)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3)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4)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6조)
- 5)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체 등 지원에 대한 내용 (안 제7조~8조)
- 6)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,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석면안전관리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
 나. 합 의: 녹색환경과
 다. 기 타: 입법예고(2019. 10. 15 ~ 10. 21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조례안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근거하여 석면폐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“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”, “석면안전주민감시단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임
-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의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영국,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과 같이

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금지 하였음
이에 건축물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석면관리와 지원 등 체계적이
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
와 같은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석면안전관리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)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,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(이하 "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야 하고, 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,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)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,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·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업안전보건법

- 제122조(석면의 해체·제거)**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·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·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·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·설비소유주등이 인력·장비 등에서 석면해체·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·제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석면해체·제거업자(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·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.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)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